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형사전자소송의 시행에 따라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발급하는 형사사법절차 관련 재판서의 정·등본 및 증명서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재판서의 정·등본 및 증명서를 발급 시 그 수수료를 일정한 경우에 무료로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4.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의 재판서의 정본·등본을 최초로 교부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수동 발급의 경우 최초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에서 발급되는 재판서의 정본·

등본과 증명서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2(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① (생략) 1. 2. (생략) <u><신설></u></p>	<p>제4조의2(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u>②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u> 1. <u>제4조제1항제2호의 재판서의 정보·등본을 최초로 교부하는 경우</u> 2. <u>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수동 발급의 경우 최초에 한한다)</u></p>
<p><u>②</u> (생략)</p>	<p><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연락처	(02) 3480 - 7633